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완전한의무화를 위한 입법방안

하 영 태*

<차례>

Ⅰ. 서론
Ⅱ.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기본구조 및 현황
Ⅲ.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완전의무화 필요성·입법례
Ⅳ.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완전의무화를 위한 입법방안
Ⅴ. 결론

주제어 : 전문가직업, 배상책임보험, 전문가배상책임보험,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임의보험, 강제보험

<국문초록>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속하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변호과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임의보험형태와 의무보험형태로 나누어져 있고, 각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을 임의보험형태로 2002년에 도입한 후 법률시장의 개방과 확대, 사회발전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 등으로 변호과오소송이 증가하자 2005년에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부분적 의무보험형태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였다.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아무리 주의를 하여도 작거나 큰 의무위반행위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변호사의 법률사무 처리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변호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법률소비자보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소비자보호와 변호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활동과 경영안정성을 위해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가입확대를 위하여 완전의무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적 보완은 약관을 통한 보완으로는 부족하며, 변호사배상책임의 의무화 내용에 대한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정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부분적 의무화 조항에 추가하여 전문가책임보상보험 전체에 대한 강제가입 등을 일반조항으로 상법 보험편에 신설하고 모든 변호사들이 변호사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변호사법에 추가하는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 강릉원주대학교 강의교수(법학박사: nemamm@naver.com)
- 논문접수일(2018.11.30), 심사개시일(2018.12.15), 게재확정일(2018.12.26)

www.kci.go.kr

Ⅰ. 서론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속하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변호과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이러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사회발전에 따른 변호과오소송의 증가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임의보험형태와 의무보험형태로 나누어져 있고, 각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도입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하여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모두에게 강제로 가입하도록 변호사법에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각 주마다 운영방법이 다르지만 일부의 주에서는 의무보험으로 하고 있으며, 강제보험으로 하지 않은 주에서도 대부분의 변호사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 외에 일본이나 영국 등은 임의보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의무보험제도로 전환을 위한 입법노력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을 임의보험형태로 2002년에 도입하였으나 변호과오소송의 저조 등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았었다. 그 후 법률시장의 개방과 확대, 사회발전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 등으로 변호과오소송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강제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자, 2005년에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에게 강제적으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부분적이지만 의무보험형태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였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본질적 기능은 변호사업무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소시키거나 회피하는 것이다. 나아가 책임을 발생시킨 가해자(변호사)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전보 기능, 보험가입자에 대한 신용부여 내지 증가 기능, 보험가입자의 의무를 준수하게 하여 보험사고발생 방지기능 등이 있다. 특히 최근 법률소비자의 인식차원에서 강조되는 것은 보험이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함으로써 변호사가 경제적 파산에 대한 두려움 없는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법률소비자를 위한 업무를 충실히 하고, 한편으로는 피해를 입은 의뢰인 등에게 확실한 손해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 보호기능을 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아무리 주의를 하여도 작거나 큰 의무위반행위가

www.kci.go.kr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변호사의 법률사무 처리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변호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법률소비자보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의 업무수행에 위험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소비자보호와 변호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활동과 경영안정성을 위해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가입확대를 위하여 완전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약관을 통한 보완으로는 부족하다. 부분의무화 조항에 추가하여 전문가책임보상보험 전체에 대한 강제가입 등을 일반조항으로 상법 보험편에 신설하고 모든 변호사들이 변호사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변호사법에 추가하는 입법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이 실정법으로 규정하게 되면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기본구조와 내용, 국내외의 변호사책임보험의 실시현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완전의무화를 위한 자료로서 변호사책임보험의 기능과 의무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현재 완전의무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의무보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영국, 미국의 제도를 비교검토 한다. 제4장에서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완전의무화를 위한 입법방안으로 전문가배상책임보험의 일반규정화, 변호사법에 모든 변호사에게 강제가입을 위한 규정신설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기본구조 및 현황

1.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기본구조

(1) 변호사책임보험의 의의

날로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사람이 그 복잡한 사안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문직업인도 사람인 이상 언제나 올바른 판단 하에 완벽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들이 요구하는 전문직업인에 대한 기대수준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 위험이란 고도의 주의의

www.kci.go.kr

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전문직업인이 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1] 전문가의 위험은 전문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전문직업인으로서 변호사는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변호과오)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2] 따라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이란 변호사가 법률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전문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불성실한 변론과 소송수행상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 및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배상책임 및 방어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이 부담하는 위험의 유형은 상소기일의 도과, 불충분한 입증자료 및 증거자료의 미제출, 변론기일의 해태와 같은 소송수행상의 과실과 법률자문상의 과실 등을 거론할 수 있다.[3]

(2) 보험관계자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관계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구성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자의 상대방이 되며,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개인 변호사나 공동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각각이 될 수 있고, 합명회사를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유한회사의 법무법인(유)의 경우는, 권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자신이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협회를 통하여야 하므로 대한변호사협회, 각 지역 변호사협회 역시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4] 손해보험의 일종인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개인변호사, 법무법인의 구성원, 법률협회 회원, 고용변호사, 기타 피고용인이 해당할 수 있다.[5]

---

1) 기홍철, "전문직 종사자의 과실과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한국보험학회지」 통권 50호, 1997. 10, 142면 이하.

2) 배기석 · 배소민,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54권 제1호, 통권 제75호, 2013, 5면.

3)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배상책임보험제도 개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심포지엄 발표자료, 2006, 25면.

4) 유주선·최병규·김은경, "변호사보험제도의 발전방향", 한국보험법학회(법무부 연구용역), 2014.11, 108면.

www.kci.go.kr

(3) 대상업무와 보험기간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대상업무는 변호사가 그 자격에 기하여 수행한 업무를 의미한다. 여기서 대상업무란 전통적인 송무와 같은 소송수행상의 각종 행위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자문, 계약서 검토 등 비전형적인 변호사의 법률사무 처리까지도 넓게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앞으로 변호사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사무의 태양이 다양화 되더라도 변호사나 그 의뢰인이 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6] 일반적으로 보험의 기간은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만료일까지'이며 1년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기로 하는 이유는 보험자에게 보험인수·보험요율 결정을 할 기회를 주어서 보험자가 안고 있는 리스크 예측의 불확실성을 한정하기 위함이다.[7] 따라서 피보험자가 1년마다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여부, 구성원의 변화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책정하게 될 것이다.[8]

(4) 보험사고

책임보험의 경우는 보험사고의 원인인 사고에 의해서 먼저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의 여부, 책임의 범위 등이 결정된 후에야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손해를 산정하게 된다. 책임보험의 특성상 보험사고의 기준은 '손해사고의 발생기준'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발생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9] 우리나라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사고를 보장함으로써 보상의무 제공시기를 손해배상청구권 발생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실제 변호과오가 저질러졌던 일자보다 상당기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소송도 보험의 보장범위로 포함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변호과오의 특성상 변호과오의 발생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변호과오 발생일과

5) 즉 보험에 가입한 변호사 및 그와 관련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피용자와 이행보조자를 모두 피보험자로 볼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인정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6) 배기석·배소민, 앞의 논문, 220면.
7) 山川一陽, "專門家責任の理論と實際", 新日本法規, 1994, 287頁.
8) 우리나라와 같이 보험가입자의 수가 적고 매년 소송에 대한 리스크와 소송비용이 고액화 되는 상황에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보험요율 변경과 함께 위험인수를 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는 보험위기를 예방하는 안전장치 중에 하나가 된다.
9) 이영철, "공인회계사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9집, 2002, 126면.

www.kci.go.kr

피해자의 소송제기일과는 기간적으로 차이가 나므로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인수거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시점을 특정 하는 것이다.[10]

2.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현황

(1) 국내의 제도운영 현황

한국은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 정식으로 도입하였다. 한국의 변호사들은 새로운 유형의 보험으로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본인의 변호사업무수행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되는 보험료를 필요하지 않는 비용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아직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다.[11] 그렇지만 사회발전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과 사회적 지원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변호사업무수행상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문인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의료과오소송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 이론도 정비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변호과오소송도 급격히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과 정착으로 증가된 법조 인력의 증가, 법률시장의 개방과 확대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의 추세에 따라 변호사 개인들의 변호사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변화, 보험계약에서 변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변호사단체의 노력, 보험회사들의 다양한 보험 상품의 개발과 보험가입조건의 완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법률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법률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무법인 이외에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이 보험이나 공제조합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2005년 1월에 이루어 졌다. 개정변호사법은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에 대하여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담당변호사와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내지 법무조합과 연대하여 손해를

10) 西島梅治, 專門家の責任と保險, 日本評論社, 1993, 129-130頁.
11) 이찬희, 앞의 논문, 30면.

www.kci.go.kr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였다(변호사법 제58조의 11, 제58조의 25). 또한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였다(변호사법 제58조의 12, 제58조의 30). 그동안 임의적 보험가입제도를 운영해오다가 부분적으로나마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개정변호사법은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발전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는 변호사의 법률사무 처리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변호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의 선고되는 등 법률소비자보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의 업무수행에 위험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소비자보호와 변호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활동과 경영안정성을 위해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가입확대를 위하여 완전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 주요국가의 제도운영 현황

해외에서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인식이 높고 법적인 제도화가 된 곳이 많이 있다. 즉 변호사의 업무수행상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일상화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거나 변호사업무의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가입이 필수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보험가입이 법률로 의무화 되어 있고,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은 임의보험의 형태로 운영되지만 변호사들은 가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12]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가 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국가들도 보험제도의 설계방법은 각각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방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도인 파리 변호사회에서는 일괄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회원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변호사회가 보험계약의 조건을 규제하며 적합하다고 인정한 복수의 보험회사 중 하나의 보험 상품을 변호사가 선택한다.[13] 독일에서는 법률로 1건당 25만 유로 이상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지

12) 이찬희, 위의 논문, 26면.

13) 영국의 변호사책임 보험료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보험회사 측에서 세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 큰 영국로펌의 보험인수를 거부하여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법

www.kci.go.kr

만 다른 국가에 비교할 때 금액은 적은 편이다. 각 변호사는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변호사회에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게 된다.

미국은 변호사 자격을 주단위로 부여하여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강제 여부도 각주에 따라 다르다. 특히 변호과오소송이 발달한 미국에는 변호과오의 책임을 물어 전문적으로 변호과오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 변호사도 있다. 그리고 피고가 되는 변호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보험에 가입했는지가 의뢰인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14] 일본에서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이 1976년에 도입되어 전국변호사협동조합연합회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조합원인 변호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15] 변호사는 임의로 이것에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갱신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나 약60%-70%의 변호사가 가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73%의 변호사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점점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 가입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의 변호사가 무보험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16] 이에 따라 일본에서도 변호사의 영업지속적 보장, 법률소비자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변호사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17]

Ⅲ.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완전의무화 필요성 및 입법례

1.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기능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본질적으로 변호사업무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소시키거나 회피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책임을 발생시킨 가해자

률사무소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中村良隆, “イギリスの辯護士責任保險について”, 自由と正義, 16卷4号, 2010, 85頁).

14) 片山達, “海外レポート(第37回);弁護士賠償責任保險の義務化”, 自由と正義 61卷(11号), 2011.11, 74頁.

15) 하영태, “일본 변호사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의 실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보험법연구(제8권 2호), 2014. 12, 14면.

16) http://www.nichibenren.or.jp/jfba_info/publication.html: 2017.10.20방문.

17) 弥永眞生, “專門家の責任と保險法論の展望”, 法律時報, 83卷2号, 2010, 15頁.

www.kci.go.kr

(변호사)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전보 기능, 보험가입자에 대한 신용부여 내지 증가 기능, 보험가입자의 의무를 준수하게 하여 보험사고발생 방지 기능 등이 있다.[18] 특히 최근 법률소비자의 인식차원에서 강조되는 변호사보상책임보험의 기능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함으로써 변호사가 경제적 파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하게 되고 법률소비자를 위한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피해를 입은 의뢰인 등에게 확실한 손해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 보호기능을 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아무리 주의를 하여도 작거나 큰 의무위반행위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때 적정한 수준의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실수한 변호사의 개인재산의 상황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배상책임의 주체로서 변호사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게기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19]

2. 의무화의 필요성의 논거

(1) 필요성의 전제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하여 모든 변호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체결을 강제하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과 일본은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여부를 변호사의 자유에 맡기는 임의보험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할 것인가 임의보험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변론과오는 의료과오와 같이 채권자의 생명·신체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제기하는 빈도도 현저히 낮은데, 동 보험을 의무가입으로 했을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동 보험의 인지도도 낮고 널리 보급된 것도 아닌데, 의무가입을 유도 했을 경우 가입자의 증가로 손해배상액의 폭증으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보험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 보험시장의 환경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 급격한 제도 개혁은 급변하고 있는 법률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거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는 필수적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있다.[20] 그럼에도 변호사배상책

18) 峰島德太郎, "損害賠償法と責任保險の理論と實務: 弁護士賠償責任保險", 信山社出版, 2005. 118頁.
19) 오종근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Vol. 274), 1999, 53면 참조.
20) 하영태, 앞의 논문, 15면. 다만 필자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에 대한 견해를 본 논문을 통

www.kci.go.kr

임보험이 완전의무보험으로 하여야 하는 필요성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제도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인 변호사의 피해를 전보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파산으로 인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의뢰인)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 필요성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2) 피해자인 의뢰인 입장

변호사의 업무상과오를 통해 손해를 보는 피해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완전의무화는 의뢰인의 충분한 손해전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논리(피해자보호 필요성)로 의무보험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변호사 중개 등의 서비스를 받기 힘든 우리나라 의뢰인들은 법률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보호해주어야 할 법률소비자에 속한다. 이와 같은 제도 하에서는 법률서비스를 받는 의뢰인들은 자력이 없는 변호사가 잘못을 했을 경우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의뢰인의 위험부담감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피보험자인 변호사의 입장

피보험자인 변호사 자신의 변호업무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법률시장의 한 구성원인 변호사의 품위유지와 신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즉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의무위반행위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때 적정한 수준의 변호사배상책임은 변호사의 개인재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고, 의뢰인에 대하여 신뢰를 담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012년부터 배출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옴으로서 변호사 업종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21] 이는 송무를 중

해 변경한다.

21) 로펌에의 사건 편중, 변호사 숫자 증가로 인한 사건 감소 등을 원인으로 한 경영난을 이유로 2012년도 한동안 폐업한 변호사가 238명에 이른다. 이에 관하여는 변호사 6명 중 1명 '워킹푸어'…로펌이 일감 '싹쓸이'…양극화 심화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12. 11. 5. 3면 참조).

www.kci.go.kr

심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경제적 기반을 약화 시키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소가가 높아, 소송에서 변호과오가 발생할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더 이상의 변호업무를 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부담을 변호사의 개인책임과 변호사배상책임보험으로 분산하여 변호사가 변호업무를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4) 제도적 차원에서 필요성

제도적 차원에 본다면, 우리나라의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사례가 외국에 비해 많지 않지만,[22] 이는 최소보험금과 보험료의 결정에서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완전의무보험의 제도화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23] 그리고 변호사로부터 징수한 회비를 기금으로 공제조합을 구성하여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기능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능력 없는 변호사의 위험을 다른 변호사의 부담으로 담보시킨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발생시킬 수 있다.[24] 따라서 변호사배상책임의 완전의무화가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3. 주요국가의 입법례

(1) 독일

독일에서는 일찍이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론 및 제도가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로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세무사, 회계사가 각각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개별법에 의무화 규정을 두고 있다.[25] 독일의 전문가책임

22) 일본은 20여 년 전인 1976년부터 임의보험의 형태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였지만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양측의 보호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3) 오종근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Vol. 274), 1999, 56~57면 참조.

24) 다만 명예변호사(Titularanwalt)는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의무가 없다. 독일변호사법 제17조에 따르면, "주법무부는 노령 혹은 신체장해를 이유로 변호사업 허가에 따른 제반권리를 포기하는 변호사에게 변호사라는 칭호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호사를 '명예변호사'라 한다. 다만 명예변호사는 일반인의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 퇴직한(i. R. 혹은 a. D)이란 문구를 부가하여 그가 더 이상 변호사활동을 하지 않음을 표시하여야 한다(Anton Braun, Berufshaftpflichtversicherungen, BRAK-Mitt. 1/1997, p7 참조).

25) Rembert Brieske, Die Berufshaftpflichtversicherung-Risikomanagement des Rechtsanwalts, in Deutscher Anwalt Verein, Ratgeber, 7 Aufl, 1997, p453.

www.kci.go.kr

보험은 독일 보험계약법 제113조 이하에서 강제보험으로 규정되어 있다.[26] 또한 독일 변호사협회(Rechtsanwaltskammer)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51조 제6항 제2문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변호사의 전문가직업책임보험자의 상호(명칭), 주소, 보험증권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피해자에게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119조에 일정한 고지의무, 정보제공의무 및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27]

독일 보험계약법 제115조[28]에 있는 요건 하에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인정된다. 또한 독일 보험계약법 제108조[29]에 의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대한 면책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독일 변호사 책임보험의 의무화 규정만 검토하고자 한다. 독일에서 영업하는 모든 변호사는 독일변호사법(BRAO) 제51조에 따라 1994년 9월부터 변호사배상책임보험(Berufshaftpflichtversicherung)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30] 독일 변호사법(BRAO)에

26) 독일 보험계약법 제113조(의무보험) (1) 법규상 계약체결의 의무가 있는(의무보험) 책임보험은 국내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2)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액을 알리고 해당 법규에 따른 의무보험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이 절의 규정은 보험계약이 법률 소정의 최소요건을 넘는 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7) 독일 보험계약법 제119조(제3자의 책무) (1) 제3자는 제115조 제1항의 청구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손해사고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안 후 2주내에 보험자에게 텍스트형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기간의 준수를 위하여는 적시에 발송하는 것으로 족하다. (2) 제3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제소한 때에는 제3자는 이를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손해사고의 확정 및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제3자로부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자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제3자에게 그것이 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로 한정된다.

28) 독일 보험계약법 제115조(직접청구권) (1) 제3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주장할 수 있다. 1. 의무보험법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상 의무이행을 위한 책임보험의 경우, 2. 보험계약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재산의 부족으로 파산청구가 거절되거나 임시파산관재인이 임명된 경우, 3. 보험계약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급부의무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급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제 117조 제1항에서 제4항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에게 직접 주장할 수 있다. 보험자와 급부의무 있는 보험계약자는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2) 제1항에 의한 청구권은 배상의무 있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소멸시효기간은 배상의무 있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하는 시점과 같이 개시된다. 그러나 그 기간은 늦어도 손해사고 이후 10년이 지나면 종료한다. 제3자의 청구권이 보험자에게 신고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은 보험자의 결정이 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도달된 시점까지 중단된다. 청구권의 보험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 및 만료중단 및 새로운 개시는 배상의무 있는 보험계약자에게도 미치고 그 반대로도 적용된다.

29) 독일 보험계약법 제108조(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처분) (1) 보험관계에서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처분은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과 강제집행이나 압류절차에서 행하여진 처분과 같다. (2) 보험금청구권의 제3자에 대한 양도는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서도 배제할 수 없다.

www.kci.go.kr

의하면 변호사로서의 허가가 직업책임보험을 체결하여야 할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즉 변호사로서의 허가증 교부를 받기위해서는 직업책임보험 체결을 증빙하거나 임시적인 보상약정이 제출되어야 한다(독일 변호사법 제12조 제2항 제2문). 또한 변호사가 규정된 직업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변호사 허가는 철회된다(독일 변호사법 제14조 제2항 10). 따라서 변호사자격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직업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한다.[31]

(2) 프랑스

프랑스는 지역마다 조금씩 제도의 차이는 있지만 1971년 이후 변호사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민사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32] 파리 변호사회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회원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변호사단체의 각 소속 변호사의 책임내용을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주의'와 '과실로 발생한 직업상의 민사책임'으로 구분하고 단체나 개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책임부담도 '업무수행 중 발행한 부주의'는 변호사단체가, '과실로 인한 직업상의 민사책임'에 대하여는 변호사가, 그리고 중첩적으로 가입한 경우는 보험에 중첩가입여부를 변호사단체나 변호사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33] 나아가 변호사의 업무수행 중에 이루어진 금전의 상환과 유가증권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도 강제가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34]

(3) 영국·미국

영국의 변호사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은 임의보험형식으로 하고 있다. 즉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계약조건을 감독하고 있으며, 변호사협회가 복수의 보험회사를 지정하고 그 중에서 변호사가 본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보

30) 유주선·최병규·김은경, 앞의 보고서, 113~117면 참조.
31)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결여를 이유로 변호사업 허가를 철회한 것으로는 1996년 11월 6일자 독일 연방법원(BGH)의 결정(BRAK-Mitt, 1/1997)을 들 수 있다.
32) 배기석·배소민, 앞의 논문, 220면.
33) L. no. 71-1130, 31 dc.1971, art.27, al.1.
34) 정태윤, "프랑스의 변호사책임론", 한림과학원총서 제55호, 1998, 282면 이하 참조.

www.kci.go.kr

험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영국에서는 글로벌한 변호업무의 증가 등으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증가하여 보험회사들이 보험인수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8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위기와 유사하다.[35] 이에 따라 최근에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강제가입을 위한 학설논의와 입법제정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각주마다 제도 운영이 다르다. 따라서 가입강제 여부도 각주마다 다르다. 오레곤주는 배상책임소송의 증가와 배상액의 고액화에 따라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인수가 거부되자 변호사협회가 의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주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전문가배상기금으로부터 1건당 일정한 보험금액(30만 달러)이상의 보험에 강제로 가입하여야 한다.[36] 그 외에 대형로펌의 경우는 강제가입보험에 가입한 후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배상책임보험상품에 추가로 가입하여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미국의 변호사협회(ABA)는 보험가입의 유무를 공시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보험가입강제를 유도하고 있다.[37] 즉 변호사 등록이나 갱신할 때 변호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무를 신고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변호사 명부에 기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여부를 의뢰인에게 직접 알려 주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주에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화 법제정을 진행하고 있다.[38]

Ⅳ.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완전의무화를 위한 입법방안

1. 전문가배상책임보험의 일반규정 입법(안)

전문가란 의사, 변호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법률에 의해

35) 미국의 경우 불법행위법이 강화되어 손해배상액이 고액화 되었던 1980년대 중반 보험위기가 닥쳤는데 특히 손해액이 큰 의사배상책임보험에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현상과 함께 의사의 폐업이나 전문 변경, 의료지 고액화 현상들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의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극적 의료 행위를 행하기도 하였다(George L. Priest, The Current Insurance Crisis and Modern Tort Law, 96 Yale L.J. 1521(1987), 1521-1526면).

36) 오레곤주 변호사 협회 보험 안내 페이지, http://www.osbar.org/csf#.

37) ABA Lawyers' professional liability(http://apps.americanbar.org/directory/2018방문).

38) Insurance of The law society of British Columbia(http://www.lawsociety.bc.ca. 2018방문).

www.kci.go.kr

자격을 인정받고 의뢰인에게 특수영역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가 복잡하고 분업화됨에 따라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39] 특히 전문가의 업무는 획일적이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40] 전문가는 고도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는 전문가위험이 존재한다.[41] 이때 부담해야하는 전문가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책임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를 임의보험으로 할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가입의 저조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개별법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 중에는 공인회계사, 의사, 법무사 등은 관련법에서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을 전면의무화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인 변호사 등은 임의보험으로 되어 있거나 부분적인 강제가입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전문가 집단의 이해에 따라 전문가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여부를 달리정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피해를 보는 의뢰인의 손해전보를 차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상법 보험편의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의 한 종류로 전문가배상책임보험규정을 신설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신설하고 의무화 규정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전문가배상책임의 내용을 통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입법(안)은 상법 제725조 의3 제1항에서 전문가의 정의규정을, 제2항에서는 전문가배상책임의 가입을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고지의무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신설(안): 상법 제725조의 3(전문가배상책임보험)]

① 전문가란 의사, 변호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법률에 의해 자격을 인정받고 의뢰인에게 특수영역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39) 배기석·배소민, 앞의 논문, 220면.
40) 유주선·최병규·김은경, 앞의 보고서, 95면.
41) 기홍철, 앞의 논문, 142면 이하.

www.kci.go.kr

② 전문가는 업무수행 중에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전문가는 보험가입여부를 업무계약 전에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변호사법에 완전의무화 규정의 개정법(안)

(1) 입법방향

한국 변호사법의 경우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을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강제가입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문가로서 변호업무수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변호사의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선진외국과 같이 전면적 의무화 보험으로 법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완전한 의무화를 위해서는 변호사법으로 모든 변호사에 대하여 보험의 강제가입조항을 신설하여야 하고,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던 보험계약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변호사법에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내용은 독일 변호사법이 참고가 될 것이며, 보험계약내용은 변호사협회가 감독하고 보험회사의 선택은 피보험자인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국의 법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입법방안

변호사법상 기존에 규정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강제가입조항은 그대로 두고 이들을 제외한 개인변호사에 대한 의무가입조항을 신설하면 제도적으로 완전한 의무가입제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변호사업 등록의 전제조건이 되도록 하고 변호업무수행 중에도 보험을 계속유지 하여야 하며,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변호과오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배상을 할 수 있는 과오의 범위와 변호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를 포함한 피보험자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변호사의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반영한 최소

www.kci.go.kr

보험금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여야 하며,[42] 보험계약의 조건 등은 변호사협회가 관장하고 보험회사의 선택권은 피보험자인 변호사에게 주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입법(안)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신설(안): 변호사법 제25조의 2(손해배상책임)]

①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변호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변호사업무수행 중 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계약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사법상의 법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개별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보험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위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변호사나 그가 사용한 보조요원의 행위에 기인하는 모든 의무위반을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정하기로 합의 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최소보험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보험계약의 조건을 정할 수 있고, 변호사는 복수의 보험회사 중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 변호사법 제8조(등록거부)]

① ~동일~.
7. 제25조의 2 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개정(안): 변호사법 제18조(등록취소)]

① ~동일~.
5. 제25조의 2 제2항에 따른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

42) 변호사의 재정 부담을 선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보험료 때문에 보험가입을 꺼리는 현상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배상책임소송의 급증과 배상액의 고액화에 따른 보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간접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www.kci.go.kr

Ⅴ. 결론

최근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법조 인력의 증가, 법률시장의 개방과 확대, 사회발전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 등으로 변호과오소송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강제가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책임을 발생시킨 가해자(변호사)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전보 기능, 보험가입자에 대한 신용부여 내지 증가 기능, 보험가입자의 의무를 준수하게 하여 보험사고발생 방지기능 등을 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익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제도의 운영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와 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강제가입과 그 담보범위에 대해 법률로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미국은 법률을 통한 강제가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약관 등을 통하여 의무가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으며, 변호사 또한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의 인식의 확산으로 대부분 가입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영국은 법률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에 대하여만 부분적으로 보험가입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인변호사나 개인변호사들이 단순히 결합되어 있는 합명회사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험가입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배상책임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입법보완을 통해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완전의무화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배상책임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는 일반조항을 상법보험편 상법 제725조 의3 제1항에서 전문가의 정의규정을, 제2항에서는 전문가배상책임의 가입을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고지의무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변호사법에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변호사업 등록의 전제조건이 되도록 하고 변호업무수행 중에도 보험을 계속유지 하여야 하며,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변호사법 제25조의 2 제②

www.kci.go.kr

항·제8조 제①항 제7호·제18조 제①항 제5호 신설), 실질적인 변호과오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배상을 할 수 있는 과오의 범위와 변호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를 포함한 피보험자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의 2 제③항). 나아가 변호사의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반영한 최소보험금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여야 하며(동법 제25조의 2 제④항), 보험계약의 조건 등은 변호사협회가 관장하고 보험회사의 선택권은 피보험자인 변호사에게 주도록 규정(동법 제25조의 2 제⑤항)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기홍철, "전문직 종사자의 과실과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한국보험학회지」 통권 50호, 1997.

배기석 · 배소민,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54권 제1호, 통권 제75호, 2013.

오종근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Vol. 274), 1999.

유주선·최병규·김은경, "변호사보험제도의 발전방향", 한국보험법학회(법무부 연구용역), 2014.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배상책임보험제도 개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심포지엄 발표자료, 2006.

이영철, "공인회계사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9집, 2002.

정태윤, "프랑스의 변호사책임론", 한림과학원총서 제55호, 1998.

하영태, "일본 변호사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의 실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보험법연구(제8권 2호), 2014.

山川一陽, "專門家責任の理論と實際", 新日本法規, 1994.

西島梅治, "專門家の責任と保險", 日本評論社, 1993.

弥永眞生, "專門家の責任と保險法論の展望", 法律時報, 83巻2号, 2010.

峰島德太郎, "損害賠償法と責任保險の理論と實務:弁護士賠償責任保險", 信山社出版, 2005.

中村良隆, "イギリスの辯護士責任保險について", 自由と正義, 16巻4号, 2010.

片山達, "海外レポート(第37回);弁護士賠償責任保險の義務化", 自由と正義 61巻(11号), 2011.

Anton Braun, Berufshaftpflichtversicherungen, BRAK-Mitt. 1/1997.

Rembert Brieske, Die Berufshaftpflichtversicherung-Risikomanagement des Rechtsanwalts, in Deutscher Anwalt Verein, Ratgeber, 7 Aufl, 1997.

www.kci.go.kr

George L. Priest, The Current Insurance Crisis and Modern Tort Law, 96 Yale L.J. 1521(1987).

http://www.lawsociety.bc.ca. 2018.

http://apps.americanbar.org/directory/2018.

http://www.osbar.org/csf#.

http://www.nichibenren.or.jp/jfba_info/publication.html: 2017.

www.kci.go.kr

〈Abstract〉

Legislation plan for full mandatory Lawyer reparations liability insurance

Ha, Young Tae

The lawyer's reparations liability insurance, which belongs to the professional reparations liability insurance, is an insurance that tells the lawyer about the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injured client or a third party due to a defense mistake that occurs while performing business. Lawyers'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is classified into voluntary insurance and mandatory insurance, and is introduced differently in each country. In 2005, the Korea Lawsuit Corporation (LLC) increased its liability insurance by introducing liability insurance as a voluntary insurance system in 2002, opening up and expanding the legal market, and improving the public's sense of rights as a result of social development. And the statutory union to compulsory insurance.

It is a reality that the attorneys are obliged to pay a minimum amount of attention or violation of their duty. In addition, claims for damages based on the negligence of the lawyer in the process of legal affairs are increasing,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admitt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lawyer is sent to the publ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 for full legal obligation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lawyer liability insurance for legal consumer protection, lawyer's efficient business execution activities and management stability.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insufficient for the supplementation through the contract, and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as the actual law for the prevention of the dispute about contents mandatory of the lawyer indemnity liability. In addition to the partial mandatory provisions in the current law,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legislation to add the provision that all lawyers should be obliged to comply with lawyer liability insurance, Do.

Key Words : Professional occupation, reparations Liability insurance, Professional reparations Liability insurance, Lawyer reparations liability insurance, Voluntary insurance, Compulsory insurance

www.kci.go.kr